**수익증권 매매계약서**

본 수익증권 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21년 [ ]월 [ ]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  |  |
| --- | --- |
| **매도인1:**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워NH금융타워(타워2)) |
| **매도인2:**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6(여의도동)  (이하, 매도인1과 매도인2를 총칭하여 “**매도인들**”, 각각 “**매도인**”)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

**전 문**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한화 미국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이하 **“본건 투자신탁”**)는 총35,400,000,000좌의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총좌수”)를 발행하고, 매도인들은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도인1이 11,722,141,924좌, 매도인2가 23,677,858,076좌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수익증권은 최초 설정 당시 기준가 1좌당 금 1원(₩1)이다.

매도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 매도인1은[ ]좌를, 매도인2는 [ ]좌(단, 본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원본 상환 존재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각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수익증권의 매매)**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분배금 등의 지급 등)**

1.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될 매매대금은 아래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계산된 금액(단, 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이하 **“매매대금”**)으로 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본 계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정의에 따른다.

* “매매목적물 기본대금”은 해당 매도인의 해당 매매목적물의 좌수에 1좌당 1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매수인 귀속분”은 관련 분배금 중 분배금 지급시까지 매수인 외화수익률 기준 내부수익률(IRR)을 6.99%(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2021년 [ ]월 [ ]일자 IM을 기준)를 달성하는 원화금액으로 별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매도인 귀속분”은 매수인 귀속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별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매매대금 = 매매목적물 기본대금+매도인 귀속분
2. 거래 종결일 전 본건 투자신탁의 분배일이 위치할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분배금을 수령할지 여부 및 매도인이 분배금을 수령할 경우 분배금의 정산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분배일 [10]영업일(본 기간은 양사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전까지 매도인 및 매수인이 서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분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귀속분에서 해당 분배금을 공제한다.

|  |  |
| --- | --- |
| 매도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매매목적물(좌) | [ ] |
| 매매대금(원) | 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 |

|  |  |
| --- | --- |
| 매도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매매목적물(좌) | [ ] |
| 매매대금(원) | 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 |

1. 매수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날짜(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 제 8 조 제2항의 필요적 제3자 승인이 취득된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이하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  |
| --- | --- |
| 계좌개설은행 | 농협은행 |
| 계좌명의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계좌번호 | 083-05-000497 |

|  |  |
| --- | --- |
| 계좌개설은행 | 신한은행 |
| 계좌명의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계좌번호 | 150-000-052413 |

1.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일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한화 미국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투자자약정서(이하 **“투자계약서”**)의 “매입약정인수약정서”(투자계약서 별첨 1 양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전에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4일 집합투자업자, 스왑은행 지위에서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신탁업자 지위에서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Capital Call 약정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별도 약정서 체결)(이하 **“Capital Call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Capital Call 약정서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4일 집합투자업자, 스왑은행 지위에서의 국민은행 및 한국투자증권 사이에 체결한 Capital Call 약정서(국민은행 및 한국투자증권 별도 약정서 체결)에 대해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정서상의 “갑”인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협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로서 투자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매도절차의 이행)**

1.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전부를 본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판매회사**”)에 개설된 매수인이 요청하는 계좌(계좌번호: DB금융투자 [ ])로 계좌간 대체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객계좌부의 인증된 사본을 판매회사를 통해 매수인에게 발급 및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가 수익자명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제3항 이외에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본건 투자신탁 수익자로서의 지위와 동등한 법적 및 실질적 지위를 인정 받고,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 및 대항요건 구비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매도인으로서 협조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매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본건 투자신탁 관련 투자계약서에 따른 매수인 명의의 매입약정인수약정서의 제출 또는 본건 투자신탁 관련 Capital Call 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매도인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매매의 효력)**

1. 제2조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 및 제3조에 의한 매도절차의 이행이 모두 완결(이하 “**거래종결**”)된 때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갖는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종결일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본건 투자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건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기타 일체의 이익금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선행조건)**

1. 매수인의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6조의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매도인이 자신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할 것
4. 매도인이 투자매매목적물 양도에 대해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할 것
5. 매도인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
6. 매도인의 제3조에 따른 매도절차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제7조의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8. 매수인이 자신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매도인에게 교부할 것
9. 매수인이 제 2조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10. 매수인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

**제6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일 현재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자진술하고 보장한다.

1. 매도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 정부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매매목적물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함한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4.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도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조건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도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매도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매도인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나 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매도는 매도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매도인은 일반채권자를 해(害)할 의도로 매매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7.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타인의 동의, 승인이나 통지는, 매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완료하였거나 거래종결일까지 완료하여 거래종결일 현재 유효한 상태에 있다.
8. 매도인이 아는 한,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및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서류 등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7조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매수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고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 정부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매수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제8조 (확약사항)**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건 거래가 조속히 이행되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2. 매도인은 본건 투자신탁이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LP의 지분을 취득한뒤 발행한 수익증권의 귀속 주체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호주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승인 및 미국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이하 총칭하여 “**필요적 제3자 승인**”)이 적시에 취득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에 협력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각 진술 및 보장사항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기타 의무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위반을 치유할 것을 요청한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4.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이행되기 이전에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청산, 지급정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5. 매도인은 필요적 제3자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도 그 즉시 해제된다.
6. 본 계약이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i)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매매대금 수령일로부터 그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날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말함)을 반환하여야 하고(특히,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필요적 제3자 승인의 거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ii) 매수인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반환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7.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제10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단, 필요적 제3자 승인의 거절 및 그로 인한 제9조 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나 당사자들 간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본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손해액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거나 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 중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 본 조 제2항의 시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세금 및 비용)**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로 받아야 한다.

|  |  |
| --- | --- |
| **매도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참조: 윤현우 차장  전화: 02 768 7419  팩스: 0505 083 1417  전자우편: kevinyoon@nhqv.com |
|  |  |
|  |  |
| **매도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참조: 최서웅 차장  전화: 02 – 3772 – 7058  팩스: 02 – 3772 – 7686  전자우편: ryan.choi @ hanwha.com |
|  |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참조: [ ]  전화: [ ]  팩스: [ ]  전자우편: [ ] |

**제13조 (양도 등)**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4조 (일부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조건의 포기는 본 계약의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비밀 준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본 계약과관련하여 법률고문 또는 회계사, 기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사본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고,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의 거래종결일 또는 본건 투자신탁의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존속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계약의 체결ㆍ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실행은 각 당사자 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각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차 책임 또는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에게는 그와 관련된 책임 또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개별책임의 원칙).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본 계약의 적법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한 다음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 --- | --- |
| **매도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 |
| **매도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희 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철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